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 - 06750호

시행일자 2023. 8. 3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(제11판) 개정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10103(2023.8.29.)

3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서(제11판)」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진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ma.org > 공지·뉴스 >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)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질병관리청 홈페이지(알림·자료 → 법령·지침·서식 → 코로나19지침)에서도 확인 가능

○ (주요 개정사항)

- ▲ 처방 대상자에 대한 범위 구체화
- ▲ 먹는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관련 내용 추가
- ▲ 먹는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변경 내용 추가 등

※ (시행일) 2023. 8. 31.(목)

* 붙임 :

1.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.
2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1판(한글판, PDF) 1부.
3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.
4. [별첨]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&A_제11판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
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이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